

제260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14.

기획행정위원회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2026호
----------	---------

2022. 3. 1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4.
- 나. 회부일자 : 2023. 3. 8.
- 다. 상정일자 : 2023. 3. 13.

2. 안건설명

- 가. 제안설명자 : 광진구청장
- 나. 제출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 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제3차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경수)

- 의안번호 제2026호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광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회차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내에 소재하여 2014년 5월 12일 개소한 이후 민간위탁 중에 있는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연속하여 3회차 민간위탁함에 있어 “매 3회차마다 구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